

---

# 2021년 자율관리어업 시행계획

---

2021. 6.



해양수산부

# 목 차

I. 수립 배경 .....	1
II. 2020년 추진성과 .....	2
III. 2021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	3
IV. 2021년 세부 시행계획 .....	4
1. 체계적 교육으로 전문성 확보 및 공동체 평가·지원 .....	4
2. 현장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추진 .....	5
3. 내실화를 위한 기반 마련 .....	6
4.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 확산 .....	7
V. 투자 계획 .....	8

# I. 수립 배경

## □ 수립 배경

- 자율관리어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1.2.19)됨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추진 중**

\* 동법 제5조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체계적인 지원 방안,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1~'25)」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1년도 시행계획 수립**(「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주요 내용

- 자율관리어업 재도약을 통한 풍요로운 어촌 실현을 위해 **4개 주요 과제, 12개 세부 추진과제 추진**

- 자율관리어업 공모제도 및 우수공동체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추진 체계 개편을 통해 **우수공동체 비율 확대**('21년 30%→'25년 35%)
- 젊은 지도자 육성, 전문강사 육성, 찾아가는 자율관리어업 학교 운영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공익적 역할을 강화** 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비전	자율관리어업 재도약을 통한 풍요로운 어촌 실현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자원보전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li> <li>❖ 자립형 우수공동체 확대와 대내·외 긍정적 인식 제고</li> <li>❖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위한 체계 개편을 통해 재도약 실현</li> </ul>	
주요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12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b> 자율관리어업 추진 체계 개편</li> <li><b>2</b> 자율관리어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li> <li><b>3</b>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기반 구축</li> <li><b>4</b> 자율관리어업 공익적 역할 강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율관리어업 공모제도·우수공동체 관리 방안 도입</li> <li>② 자율관리어업 수익모델 발굴 ③ 어선어업의 자율관리어업 참여 확대</li> <li>① 젊은 지도자 육성 ② 자율관리어업 전문 강사 육성</li> <li>③ 찾아가는 자율관리어업 학교 운영</li> <li>① 지역별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② 자율관리어업 정기적 실태조사 및 연구 ③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li> <li>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함께하는 날 지정 ②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회적 기업 육성 ③ 공동체와 지역학교의 상생 프로그램 추진</li> </ol>

## Ⅱ. 2020년 추진성과

### ① 자율관리어업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1.2)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법률에서 위임한 민간단체의 범위, 공동체 구성 및 등록, 과태료 부과 기준, 실태조사 범위·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개편, 내실화 방안 마련, 활성화 기반 구축 등 12개 세부추진과제를 포함한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마련

### ②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도모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교육·컨설팅 강화
  - 공동체 우수사례, 활동일지 작성 방법,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여 교육 교재 제작 후 전국 공동체·관계기관 등에 배포(약 25천부)
  - 어업인·지역·업종 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조정협의회 운영(15회) 및 민간 컨설턴트(537개소 교육)를 통해 자율관리공동체 참여 확산 유도
- 신규 공동체 및 활동이 부진한 공동체가 성공한 공동체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동기 부여(12개소, 412명)
- 공동체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율관리어업 종합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쌍방향\* 정보 전달
  - \* 공동체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묻고 답하기, 우리 공동체 소식 등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와 공동체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구축
- 유형별로 우수공동체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활동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각자 유형에 맞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 마을, 어선, 복합, 양식, 내수면어업 유형으로 구분 / 지자체 및 참여공동체 배부

### Ⅲ. 2021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 ① 체계적 교육으로 전문성 확보 및 공동체 평가·지원

- 민간 컨설턴트를 활용한 공동체 교육을 확대하고, 공동체 평가 담당자(지자체, 수협, 연합회)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등 교육
- '21년 공동체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등급 결정 및 우수공동체 선정,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사업비 지원

#### ② 현장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추진

-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찾아가는 자율관리어업 학교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 추진
- 성공사례 현장 교육을 확대하고, 공동체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만족도, 현장 애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권역별 자율관리어업 정책 설명회 개최를 통해 '21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③ 공동체 내실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공동체 최소 구성원 수 조정\*, 어선어업 참여 확대 및 안전운항을 위한 평가 항목 신설 등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  
\* (기존) 5명~15명 이상 (변경) 10명~30명 이상
- 자율관리어업 지역별 거점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를 통해 거점센터 역할, 시범운영 방안 등 마련

#### ④ 공동체 성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참여 확산

-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공동체의 추진성과를 영상물로 제작('21.10), 국민 및 어업인들에게 홍보하여 참여 활성화 도모
- 공동체의 참여의식 고취 및 간담회 등 정보교류를 위한 제1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11월중/창원)

## IV. 2021년 세부 시행계획

### 1 체계적 교육으로 전문성 확보 및 공동체 평가·지원

#### ① 체계적 교육 추진으로 전문성 확보

- 지역별 민간 컨설턴트를 통해 자율관리어업 주요정책 및 수산자원 관리 방안 등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역량 강화("21.3~12)
  - \* ('21) 15명, 540개소 / 대상 공동체별 연간 1~3회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 공동체 운영,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련 서류 작성 요령, 평가 및 사업 추진 관련 사항 등을 교육
  - 컨설턴트 활동계획 수립, 활동실적 평가 등을 위해 상·하반기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재위촉 자료로 활용
- 공동체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법 주요 내용, 훈령 개정 내용, 정책 방향 및 '21년 사업추진 계획 등을 교육
  - \* '21.7~8월 실시(1회) / 지자체, 수협 및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평가 담당자

#### ② 공동체 평가를 통해 우수공동체 지원

- 평가위원회\*를 개최(2회)하여 공동체 등급 및 등급별 순위 결정, 우수공동체 선정 및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사업비 지원
  -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 (공동체 현지 점검) 지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지자체, 평가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교차 점검("21.7~9)
  - (평가위원회 개최) ①'21년 공동체 등급 최종 결정 및 우수공동체 선정("21.8) ②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 결정("21.10)
- 선진공동체\* 특별 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사후관리 강화("21.11)
  - \* 연 1~2개소를 선정하며, 4억(국비) 이내 지원

### 1 현장 맞춤형 교육 추진

- '찾아가는 자율관리어업 학교'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21.7~12) 하여 유사사례를 발굴하고, 교육 내용 및 재원 확보 방안 등 마련
  - 동·서·남해·제주권역에 자율관리 거점별 '자율관리어업 학교'를 설치하여 현장 방문형 교육을 통해 어업인 편익 도모
- 신규공동체 및 활동이 부진한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를 직접 방문하여 성공사례를 교육 받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 현장 교육' 추진('21.4~11)
  -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에서 시·도별 1~2개소씩 배정하여 연간 사업추진 계획 수립('21년 15개소)
  - 신규 및 평가점수 500점 미만인 공동체가 '19~'20년 우수공동체 (연 3~4개소 선정)로 선정 된 공동체를 방문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 실시
- 전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만족도, 현장 애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

\* '21.8~12월 / 1,133개소 / 서면방문 조사 / 사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건의사항 등 조사

### 2 현장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

- 공동체 회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자율관리어업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율관리어업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내용 교육
  - 5개 권역별(동·서·남해, 전남, 제주)로 실시(11회)하고 법령, 종합계획, 훈령 개정안, '21년 주요 정책 내용 교육 및 건의사항 청취('21.7~9)
- 공동체간·업종간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도록 민간차원에서 조정하는 자율조정협의회 운영('21.1~12)

\* 위원 20명 구성/총괄협의회 등 연12회 개최/'21년 4건 조정 예정

### ① 공동체 사업 체계 개편

- 자율관리어업법 및 하위법령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21.6)
  - 공동체 구성요건 중 유형별 최소 구성원 수를 확대 조정\*하여 공동체 규모화 및 내실화 도모
- \* (내수면) 5명 이상→10명 이상 (양식어선마을) 10명 이상→20명 이상 (복합) 15명 이상→30명 이상
- 어선(낚시포함) 어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 안전운항 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평가 항목\* 신설
- \* 어선안전관리 제고(안전점검 회의 교육 등) 및 안전관리기준(구명동의 착용, 과속금지) 준수 여부

### ② 자율관리어업 협력 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자율관리어업 관련 기관이 포함된 T/F를 구성(‘21.9)하여 협력방안 논의
  -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별 역할 세분화, 규정 개정 사항 검토, 새로운 사업 영역 발굴 등 논의
- 지역별 어선어업 관련 조직 및 단체를 대상으로 어선어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21.10)
  - 공동체 사업 추진 범위에 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어선어업의 실질적 선호도가 높은 사업(어선 수리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자율관리 지역별 거점센터를 공동체 관리·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 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설치·운영 방안 마련(‘21.7~12)
  - 거점센터 위치, 주요 기능과 역할, 운영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 포함



### ① 자율관리어업 홍보를 통해 참여의식 확산

-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공동체의 추진성과를 영상물로 제작(21.10), 국민 및 어업인들에게 홍보하여 참여 활성화 도모
  - 자율관리어업 참여과정 및 사업 추진 현황, 참여 이후 주요 활동 실적, 참여 전·후 달라진 점 등을 소개하여 동기 부여
  - 공동체, 지자체,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여 어업인 교육 시 활용하고, 자율관리어업 정책을 일반 국민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자료 마련
-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발간을 통해 정책 소개, 우수공동체 사례 등을 홍보함으로써 참여의식 확산(매월 2,000부 발행)
  - 자율관리어업 연간 주요 일정, 수산자원관리 및 어장관리 방법 등 우수사례, 외부전문가 기고 등 관련 정보를 공동체, 관계기관에 배포

### ② 공동체간 정보교류를 통한 참여 활성화

- 자율관리어업인의 참여의식 고취 및 정보교류를 위해 「제1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 \* '21.11월중 / 창원 컨벤션센터 / 해수부, 공동체 회원, 지자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 참석
  - 기념식, 정부포상, 우수사례 발표, 간담회, 전문가 교육, 수산관련 기자재 홍보관 운영 등 전국 공동체 회원이 모여 정보교류의 장 마련

### ③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정보제공 지원

- 활동실적 평가를 위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자율관리 공동체 활동일지를 일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제공(21.11~12)
- 자율관리어업 종합포털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연중)

## V. 투자 계획

□ '21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투자 총액은 127억원

- (육성사업비 115억원) 자원관리 등 활동실적 평가 결과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원으로 참여의식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확산교육비 1.4억원) 미 참여 어업인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신규·부진 공동체에 대한 교육 추진
- (활성화 지원 8.2억원)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홍보 추진
- (운영비 2.6억원) 우수공동체 홍보물 제작, 지정패 제작 추진

(단위: 백만원)

사 업 별	재원별	연차별 투자액		
		2019	2020	2021
총 계	계	12,724	12,724	12,724
	국 비	6,972	6,972	6,972
	지방비	4,602	4,602	4,602
	자부담	1,150	1,150	1,150
1.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소 계	11,504	11,504	11,504
	국 비	5,752	5,752	5,752
	지방비	4,602	4,602	4,602
	자부담	1,150	1,150	1,150
2.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소 계	140	140	140
	국 비	140	140	140
3.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소 계	819	819	819
	국 비	819	819	819
4. 자율관리어업 운영	소 계	261	261	261
	국 비	261	261	261

□ 연도별, 유형별 참여 공동체 현황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공동체(개소) (전년대비 증가율,%)	1,039 (5.0%)	1,086 (5.0%)	1,131 (4.1%)	1,160 (2.6%)	1,170 (0.9%)	1,108 (-5.3%)	1,120 (1.1%)	1,133 (1.2%)
- 마을어업	502	518	539	551	554	519	520	523
- 양식어업	98	98	102	102	105	100	101	102
- 어선어업	200	207	219	225	227	220	224	227
- 복합어업	176	189	193	199	201	186	190	194
- 내수면어업	63	74	78	83	83	83	85	87
참여어업인(명) (전년대비 증가율,%)	67,687 (2.0%)	69,098 (2.0%)	70,672 (2.3%)	71,795 (1.6%)	72,626 (1.2%)	66,254 (-8.8%)	66,223 (0.0%)	64,893 (-2.0%)
공동체당 평균 구성원 수(명)	65.1	63.6	62.5	61.9	62.1	59.8	59.1	57.3

□ 시·도별 참여공동체 현황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63	1	6	1	2	7	-	4	5	20	7	8	2
2002	79	2	6	2	2	9	-	5	7	25	8	10	3
2003	122	4	7	3	3	15	-	6	9	28	15	16	6
2004	174	5	8	5	7	16	-	13	10	53	23	19	15
2005	308	5	13	10	12	21	5	27	25	99	37	33	21
2006	445	10	15	13	16	28	5	46	27	147	47	60	31
2007	579	15	25	15	23	39	7	49	38	184	69	76	39
2008	659	15	29	15	24	47	8	50	41	215	73	100	42
2009	758	18	36	16	24	58	12	63	41	236	78	134	42
2010	863	21	40	18	29	71	16	74	41	258	87	163	45
2011	932 (63,860)	25 (1,990)	43 (3,374)	20 (1,744)	32 (2,073)	82 (5,499)	17 (339)	82 (7,029)	44 (3,137)	271 (19,445)	91 (4,888)	177 (9,165)	48 (5,177)
2012	989 (66,410)	28 (2,104)	50 (3,772)	20 (1,740)	34 (2,137)	82 (5,429)	17 (348)	91 (7,417)	46 (3,188)	289 (20,200)	97 (5,256)	180 (9,153)	55 (5,666)
2013	1,039 (67,687)	31 (2,188)	53 (3,970)	21 (1,775)	36 (2,115)	84 (5,521)	18 (351)	99 (7,927)	50 (3,308)	293 (20,426)	106 (5,513)	193 (9,564)	55 (5,029)
2014	1,086 (69,098)	33 (2,257)	54 (4,107)	22 (1,792)	36 (2,124)	89 (5,526)	19 (380)	107 (8,170)	53 (3,557)	301 (20,719)	112 (5,274)	203 (9,970)	57 (5,222)
2015	1,131 70,672	35 (2,390)	55 (4,282)	22 (1,840)	39 (2,228)	93 (5,666)	20 (377)	115 (8,681)	55 (3,540)	305 (20,645)	113 (5,633)	222 (10,509)	57 (4,881)
2016	1,160 71,795	37 (2,535)	55 (4,282)	23 (1,860)	39 (2,232)	93 (5,666)	22 (388)	123 (9,156)	56 (3,573)	308 (20,745)	117 (5,748)	230 (10,729)	57 (4,881)
2017	1,170 72,626	37 (2,580)	55 (4,282)	23 (1,769)	38 (2,349)	95 (5,536)	21 (326)	128 (9,507)	56 (3,573)	312 (21,025)	117 (5,674)	231 (10,684)	57 (5,321)
2018	1,108 66,254	35 (2,517)	53 (4,211)	23 (1,769)	38 (2,349)	87 (5,035)	21 (326)	114 (8,319)	56 (3,549)	283 (17,581)	116 (5,727)	230 (9,965)	52 (4,906)
2019	1,120 66,223	35 (2,517)	53 (4,211)	23 (1,778)	40 (2,414)	87 (4,903)	21 (322)	115 (8,382)	57 (3,654)	284 (17,587)	116 (5,486)	237 (10,064)	52 (4,905)
2020 (어업인수)	1,133 64,893	36 (2,402)	43 (3,841)	24 (1,682)	40 (2,444)	89 (4,948)	21 (304)	120 (8,977)	57 (3,654)	287 (17,722)	118 (5,382)	246 (9,977)	52 (3,560)